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가단506372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변론 종결 2020. 11. 10.

판결 선고 2020.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70,056원 및 그중 13,506,759원에 대하여 2020. 2.28.부터 2020.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7.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7. 6. 17. 피고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건물 제5층 E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8. 9.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11. 15.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과 100,000,000원을대출기간은 2017. 11. 17.부터 2019. 8. 9.까지, 약정이율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 + 2.0%,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율 +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를 적용)로하되, 최고 연 15% 이내로 정하여 주택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F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20,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근질권설정통지 권한을 법무법인 G(이하 'G'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주었다. 이에 G는 2017. 11.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질권의 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 C은 2017. 11. 16.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7. 피고 B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F은행, 보험가입금액 11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1. 17.부터 2019. 8.9.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해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다만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연체이율을 적용]이다.

라. 이후 F은행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2. 27. F은행에 83,530,481원을 지급하였다. F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0. 2. 28. 피고 C에게 근질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2. 27. 이후 피고 B로부터 합계 70,023,722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위변제 원금 잔액은 13,506,759원(80,530,481원-70,923,722원)이고, 충당된 위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363,2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4,807,056원(원금 잔액 합계 13,506,759원+확정손해금 1,363,297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3,506,759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2020. 3. 28.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0. 9. 11.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7.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근질권 한도액 내에서 이 사건 근질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질권 실행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구상금 채무와 질권 실행에 따른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807,056원(원금 잔액 합계 13,506,759원+확정손해금 1,363,297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3,506,759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2020. 3.

28.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0. 9. 11.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7.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 B나 F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 B가 아닌 F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가 2017. 11. 15. 피고 C에게 근질권설정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 C이 2017. 11. 16.경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강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질권의 설정 사실을 통지하면서,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F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계약만기, 계약해지 등)되거나 또는 입주 전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임차인이 F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F은행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한 사실, F은행으로부터 권리조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H의 상담원은 2017. 11. 16. 피고 C에게 전화(I)하여 피고 B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질권설정통지서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통지서류의 기재 내용은 나중에 세입자인 피고 B가 이사 나갈 때 질권설정금액을 F은행에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고,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간다 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다 주지 말고 질권설정금액은 F은행으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 B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분쟁의 발생 과정,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패소자인 피고 B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 B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유미